

[붙임 1] 의견서

의 건 서				
행정예고명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법인) 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지정위치 (행정예고 안)				
의견제출 내용				
※ 상기 기재 내용란 부족 시 별지 추가 작성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987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중구 고시 제2021-135호(2021.11.24.), 중구 고시 제2021-41호(2021.04.07.), 중구 고시 제2021-136호(2021.11.24.)로 각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세운3-8구역, 세운3-9구역, 세운3-10구역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40호(2023.12.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구역통합) 결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10.11.(금) ~ 2024.10.25.(금) (15일간)
2.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6층)
3. **공람내용**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27번지 일대
 - 시행면적 : 12,496.90㎡ (대지면적 : 10,358.0 / 정비기반시설면적 : 2,138.9㎡)
-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디블록 주식회사 대표 박래영 외 1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라.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년

마. 사업시행인가일

- 세운3-8구역 : 2021.11.16. / 세운3-9구역 : 2021.04.02. /세운3-10구역 : 2022.11.16.

바. 사업시행계획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8구역	3-9구역	3-10구역	세운 3-8,9,10구역
사업명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227번지 일대 (3,9 12,8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240-1번지 일대(4, 179,10㎡)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72-5번지 일대(4,379. 7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12,496.90 ㎡)
사업시행자 변경	더센터시티제삼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래영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승수	더센터시티제삼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래영	디블록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래영 외 1인
사업시행자 주된 주소 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12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 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12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12층(삼성 동, 파르나스타워)
사업기간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 터 54개월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 터 72개월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 터 54개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84개월
건축계획	지하 8층/ 지상26층, 연면적 45,487.59㎡	지하 9층/ 지상26층, 연면적 46,323.59㎡	지하 9층/ 지상18층, 연면적 50,882.45㎡	지하 9층/ 지상 39층 연면적 225,623.19㎡

※ 기타 변경사항 : 별첨 구비서류 참고

4. 관계도서 : 세운 3-8,9,10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 도서를 중구청 도심 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 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과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988호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 계획이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11호(1982.10.13.)로 재개발사업시행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662호(198 5.11.08.)로 재개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0호(2021.10.1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 특별시중구고시 제2021-125호(2021.10.27.)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 024-376호(2024.08.01.)로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된 우리 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남창동 9-1번지 일대 남대 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남대문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	73,835.5	-	73,835.5	건고 제123호 (‘77.06.29.)

2. 지구 지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	구분(㎡)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	
기정	남대문	7-1지구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2,194.6	1,713.9	480.7	일반정비 (시행중)

※ 남대문 7-1지구 포함 변경사항 없음